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제40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사)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제4조 본 대회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하키협회 2021년도 경기인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 팀 이어야한다.
2. 지도자(부장,감독,코치,트레이너)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신청 할 수 있다.
3. 감독의 경우 전공자 감독이 없는 단체(팀)(동일시도)에 한하여 지도자 이중 등록 후 참가신청이 가능하다(참가 신청 시 양쪽 소속단체장의 동의서 첨부 필수), 이 경우 동일 대회 세부 종별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4. 동일 소속 팀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운영 하는 단체(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이 이중으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대회 세부 종별에 중복 출전할 수 있다.
5. A팀에 등록된 코치는 B팀 감독으로 등록 하지 못한다.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는 3팀 참가 시 리그경기, 4팀 이상 참가 시 토너먼트로 진행한다.(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일정은 우리 협회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제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60분(15분*4쿼터)으로 한다.

1.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페널티 슈트 아웃을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2. 페널티 슈트 아웃은 경기규칙 부록 11. 페널티 슈트아웃 규정에 따른다.
3.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감독관(T.O 등) 통제에 따라야 한다.
4. 리그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채점방법은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1)이긴 경기 수 (2)골득실차 (3)다득점 (4)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네 가지가 같은 경우 페널티 슈트 아웃 5회로 한다.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18명 엔트리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한다.

제8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

(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 득점차가 발생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시간의 경기만,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페널티 슈트아웃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한다)

제10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
(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

1. 경기도중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 본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몰수게임으로 처리 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2. 대회기간 중 옐로카드를 3회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4.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와 선수는 [일시퇴장(옐로카드), 완전퇴장(레드카드)]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5. 경기 중 발생한 사안의 이의신청(부정선수, 심판판정, 경기장 질서문란)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단장.부장.감독 명의로)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이의 신청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에, 사안은 경기위원회(T.D, A T.D, U.M)에서 결정한다. 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6. 팀 벤치에 감독, 코치가 특별한 사유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경기 중 시행규칙” 에 의거 처리한다.
7.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경기 중 시행규칙” 에 의거 처리한다.

제12조 본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본 대회 대표자회의 시 대진추첨은 팀 관계자(단장, 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만 참가 할 수 있다.(선수는 불가 하며, 팀 관계자가 아닌 자가 추첨 시 재 추첨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